



ENZACTA

life. rebuilt.

제 4 장 청약 철회  
주식회사 엔잭타

## 제 4 장 청약 철회

### 제 12 조 (청약 철회의 기간 및 비용 공제)

청약 철회의 기간 및 비용 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수령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.
2. 소비자가 어떠한 이유로 철회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그 상품을 전달한 회원에게 청약철회함이 원칙이나 해당 회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원에 대하여 청약 철회가 곤란할 경우에만 한하여 소비자는 회사에 직접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.
3. 회원은 상품을 구입한 후 수령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. 단, 회원이 되고자 최초 구매한 상품은 소비자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14 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.
4. 상품을 반환 시에는 회사가 지급한 장려금과 기간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 가능하다. 상품 수령일로부터 반환되는 기간에 따른 환불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1 개월 초과	2 개월 초과	3 개월 초과
공제율	5%	7%	반환불가

☞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8 조(청약 철회 등의 효과), 시행령 24 조(재화 등의 반환시 공제 비용)

### 제 13 조 (청약 철회의 행사 방법 및 효과)

청약 철회의 행사 방법 및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원은 청약 철회시 이미 공급받은 재화(상품 등)를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 하다.
  - 가. 상품을 사용하였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(상품 등)를 훼손한 경우
  - 나. 기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 조에 해당되는 경우
2. 회사는 재화(상품 등)를 반환 받는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(상품 등)의 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,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에 상품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.